

교원 연구년제 운영세칙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3조(자격 및 기간) ① 본 대학 <u>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</u>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년 만료후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3년 미만인 교원은 제외한다.</p> <p>1.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종료 후 6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2. 직전 연구년 종료후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6월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>제3조(자격 및 기간) ① 본 대학 <u>전임교원</u>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년 만료후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3년 미만인 교원은 제외한다.</p> <p>1.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종료 후 <u>3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</u>, 6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2. (삭제: 2016.0.0)</p> <p>① ~ ③ (현행유지)</p> <p><u>④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요청에 대해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본 대학 근무연수에 연구년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-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교수를 포함한 전체 전임교원으로 연구년 자격대상 확대</p> <p>-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 제한 완화</p> <p>-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예외규정 신설</p>
<p>제5조(신분보장) 연구년 기간 동안 당해 교원의 신분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.</p> <p>2. (삭제: 2008.3.1)</p> <p>3. 연구년 기간은 재직년수에 삽입하며, 연구년 기간 중 승진 등은 계속 시행한다.</p> <p>4. 연구년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지급한다. <u>단, 교내 연구년의 경우는 월봉액의 1할을 감액 지급한다.</u></p>	<p>제5조(신분보장) 연구년 기간 동안 당해 교원의 신분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.</p> <p>2. (삭제: 2008.3.1)</p> <p>3. 연구년 기간은 재직년수에 삽입하며, 연구년 기간 중 승진 등은 계속 시행한다.</p> <p>4. 연구년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지급한다.</p>	<p>연구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므로, 연구년동안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함.</p>
<p>제4조(인원제한) 매학기 연구년 허가인원은 2개월 이상의 출장, 파견, 연수, 휴직 교원을 포함하여 학과 전임교원 총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허가인원 및 학과 전임교원 총수 산정시 제외한다.</p> <p>1. 파견기관에서 인건비 등 전액을 부담하는 파견으로서 1년을 초과하는 파견 기간</p>	<p>제4조(인원제한) (현행유지)</p>	

<p>2. 한국연구재단 등 대학의 필요에 의해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파견</p> <p>3. 정관 제47조 제6호에 의한 휴직으로서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</p>	<p>3. 정관 제47조 제6호 또는 제11호에 의한 휴직으로서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</p>	<p>-창업휴직을 포함하도록 변경 ※ 법인 정관 제47조 11호: 창업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</p>
<p>제11조(영리목적의 활동 금지) 연구년을 허가 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본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<u>연구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</u> 순수한 영리목적의 타 기관 피고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.</p>	<p>제11조(영리목적의 활동 금지) 연구년을 허가 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본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학술단체 및 산업체 등의 연구/산학협력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순수한 영리목적의 타 기관 피고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.</p>	<p>-연구년 수행기관에 산업체를 포함하여 산학협력 활동 강화</p>